

■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[별표 14] <개정 2025. 4. 18.>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97조제1항 관련)

| 구 분 | 대 상                | 일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결 혼 | 본 인              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자 녀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출 산 | 배우자                | 20<br>(한 번에<br>둘 이상의<br>자녀를<br>출산한<br>경우에는<br>25일) |
| 입 양 | 본 인         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 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|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|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    |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  | 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비 고 :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  
하며,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  
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